

골판지포장 · 物流産業政策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입법예고하였으며, 한국 골판지 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 96. 6. 11일자 재활용제품에 속하는 골판지용라이너, 골심지, 골판지, 골판지상

자에 대하여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기준에 맞추어 개정건의를 하였다. 동법률 시행령중 업계 관심부분을 발췌 게재한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N.

건의서
PROPOSITION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별표1] 개정(안)

개정(안)내용

1996. 6. 11 작성

정부 개정(안)	조합 개정건의(안)	개정 건의 사유
<p><별표1> 재활용 제품 (제2조 관련)</p> <p>1.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p> <p>가. 폐금속류</p> <p>나. 폐석회류</p> <p>2. 폐지를 사용하여 —————</p> <p>가. —————</p> <p>나. 폐지를 —————</p> <p>(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이상 사용한 골심지</p> <p>(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70%이상 사용한 백판지</p>	<p><별표1> 재활용 제품(제2조 관련)</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p> <p>가. 폐 금속류 —————</p> <p>2. 폐지를 사용하여 —————</p> <p>가. —————</p> <p>나. 폐지를 —————</p> <p>(1)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라이너</p> <p>(2)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90% 이상 사용한 골판지용 골심지</p> <p>(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70% 이상 사용한 판지상자용 백판지</p>	<p>1. KSM 7502, 7076에 의하면 라이너 및 골심지는 골판지용 라이너, 골판지용 골심지로 표기 정의되어 있어, 용어의 일치 필요</p> <p>2. 이중양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경우 5점의 원지중 파강, 압강 또는 인쇄적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Kraft Liner 사용 경우 있음. 따라서 골판지, 골판지상자 등 재생 판지 제품에 있어서는 총량을 기준함이 상당함.</p>

정부 개정(안)	조합 개정건의(안)	개정 건의 사유
(3)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50% 이상 사용한 라이너지 (4) (1)~(3)호의 재생 판지를 사용한 재생판지 제품.	(4) (1)~(3) 호의 재생판지를 사용하거나, 폐지를 중량기준으로 55% 이상 사용한 골판지,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등 재생판지 제품 다. _____	3. 재생판지 제품의 대표적 제품인 골판지, 골판지상자, 판지상자의 구체적 명기 필요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발췌안)

1. 개정이유

제72차('95.2.24)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의 요율과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정이후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제1·2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우선구매 등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1종 지정제품으로서 가전제품 중 에어컨디셔너와 컴퓨터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표시 및 분리수거 안내문구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2종 지정제품의 합성수지용기를 합성수지제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다. 폐기물 예치금대상품목으로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선박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전제품 중 냉장고를 추가함(안 제15조).

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비용부담대상품목에 화장품의 플라스틱용기, 컵라면 및 담배를 추가하고 전지중 망간전지 및 알카리·망간전지를 제외함(안 제 17조).

마. 제72차('95.2.24)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치금요율의 2000년 실회수·처리비용의 65% 시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 예치금요율을 실회수·처리비용과 연계하여 조정(안 별표 1).

바. 폐기물부담금대상품목 중 부담금 요율 및 금액이 실회수·처리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품목에 대한 부담금 요율 및 금액조정(안 별표2).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중 PET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냉장고, 선박용 윤활유에 대한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1996년도에 부과·징수할 예치금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하반기 제품출고실적을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으로 보아 예치금을 산출하고 전년도 제품출고실적 신고시기를 1996년 7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치금의 납부 고지시기를 199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중 음식료류·주류·의약품, 전지, 타이어, 윤활유(선박용 제외), 가전제품(냉장고 제외)에 대한 〈별표 1〉의 예치금요율 및 금액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중 화장품의 플라스틱용기, 컵라면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도에 부과·징수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하반기 제품출고실적을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출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중 살충제·부탄가스제품·유독물제품, 화장품(플라스틱용기 제외), 과자제품, 전지, 부동산, 형광등, 껌, 1회용기저귀 및 합성수지에 대한 〈별표 2〉의 부담금요율 및 금액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1]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제18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1] 예치금 및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제18조 및 제21조 관련)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음식료류 · 주류 · 의약품 (<u>신설</u>)	가. 종이팩 · 250ml 이하 · 250ml 초과	개당 20전 개당 40전	1. 음식료류 · 주류 · 의약품 · 세제류	가. 종이팩 · 250ml 이하 · 250ml 초과	개당 0.6원 개당 1.2원	- 합성수지는 회수·처리비용 및 각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 -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6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부담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출연이 '97. 7. 1부터 폐지됨에 따라 동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용기의 사용으로 매립용량증대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컵라면과 화장품을 부담금대상 품목으로 추가.
	나. 금속캔 · 뚜껑부착형 · 뚜껑분리형	개당 2원 개당 4원		나. 금속캔 · 뚜껑부착형 · 뚜껑분리형	개당 3원 개당 6원	
	다. 유리병 · 100ml이하 (의약품에 한한다) · 350ml이하 · 350ml초과	개당 1원50전 개당 2원 개당 3원		다. 유리병 · 100ml이하 (의약품에 한한다) · 350ml이하 · 350ml초과	개당 3원 개당 5원 개당 7원	
	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500ml이하 · 500ml초과 1500ml 이하 · 1500ml 초과	개당 3원 개당 5원 개당 7원		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500ml이하 · 500ml초과 1500ml 이하 · 1500ml 초과	개당 5원 개당 7원 개당 9원	
2. 전지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개당 100원 개당 50원	2. 전지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개당 122원 개당 92원	
3. 타이어	가. 대형 나. 중·소형 다. 이륜차용	개당 400원 개당 100원 개당 40원	3. 타이어	가. 대형 나. 중·소형 다. 이륜차용	개당 480원 개당 160원 개당 60원	
4. 윤활유	· 윤활유	l 당 20원	4. 윤활유	· 윤활유	l 당 35원	
5. 가전제품	가. 텔레비전 나. 세탁기 다. 에어컨디셔너 (<u>신설</u>)	kg당 30원 kg당 30원 kg당 30원	5. 가전제품	가. 텔레비전 나. 세탁기 다. 에어컨디셔너 라. 냉장고	kg당 90원 kg당 50원 kg당 50원 kg당 70원	
6. 합성수지	· 폴리에틸렌 · 염화비닐수지 · 폴리프로필렌 · 에이·비·에스(A·B·S)수지 · 폴리스틸렌 · 에이·에스(AS)수지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코폴리머 ·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머 ·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VA)수지 ·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수지 · 폴리에스테르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수입페플라스틱류 · 폴리아세틸	판매가의 0.7%	6. 합성수지	· 폴리에틸렌 · 염화비닐수지 · 폴리프로필렌 · 에이·비·에스(A·B·S)수지 · 폴리스틸렌 · 에이·에스(A·S)수지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스티렌코폴리머 ·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머 ·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VA)수지 ·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수지 · 폴리에스테르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수입페플라스틱류 · 폴리아세틸	판매가의 3.0%	
		판매가의 0.35%			판매가의 1.5%	
7. (<u>신설</u>)			7. 컵라면	· 컵라면	개당 1원	
8. (<u>신설</u>)			8. 담배	· 담배	갑당 4원	

비고 : (생략)

비고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 관련)			[별표2] 부담금의 산출기준(제8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 유독물제품	가. 살충제·유독물용기 · 500ml 이하	개당 5원	1. 살충제· 부탄가스제품 · 유독물제품	가. 살충제·부탄가스용기 · 500ml 이하	개당 9원
	· 500ml 초과	개당 11원		· 500ml 초과	개당 23원
2. 화장품	나. 부탄가스용기	개당 6원	2. 화장품	나. 유독물용기 · 500ml 이하	개당 7원
	가. 유리병 · 100ml 이하	개당 2원		· 500ml 초과	개당 10원
	· 100ml 초과	개당 3원		가. 유리병 · 100ml 이하	개당 4원
	나. 금속용기 · 분사형금속용기	개당 6원		· 100ml 초과	개당 7원
3. 과자제품	· 기타금속용기	개당 4원		나. 금속용기 · 분사형금속용기	개당 10원
	〈신설〉			· 기타금속용기	개당 4원
4. 전 지	· 3가지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개당 5원	3. 과자제품	다. 플라스틱용기 · 500ml 이하	개당 7원
	· 4가지이상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개당 10원		· 500ml 초과	개당 16원
5. 부동액	· 리튬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망간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개당 1원50전	4. 전지	· 3가지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개당 6원
	· 부동액	1 당 20원		· 4가지이상 재료사용복합재료용기류	개당 12원
6. 형광등	· 부동액	개당 5원	5. 부동액	·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개당 2원
	· 형광등	개당 5원		· 부동액	1 당 60원
7. 껌	· 껌	판매가의 0.25%	6. 형광등	· 형광등	개당 15원
	· 1회용 기저귀	개당 1원		· 껌	판매가의 0.3%
8. 1회용 기저귀	· 1회용 기저귀	개당 1원	7. 껌	· 1회용 기저귀	개당 2원
				· 1회용 기저귀	개당 2원

'96년도 비축 대상물자 범위
개정경제원시제22-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1996년 5월 11일 재정경제원장관

(비축물자의 범위)

- | | | | |
|---------------|--------------|-----------|--------------|
| 1. 알루미늄 | 2. 전기등 | 3. 아연 | 4. 연 |
| 5. 주석 | 6. 니켈 | 7. 페로바나듐 | 8. 페로몰리브덴 |
| 9. 페로실리콘 | 10. 페로크롬 | 11. 코발트 | 12. 안티모니 |
| 13. 화학필프 | 14. 생고무 | 15. 철재빌레트 | 16. 칩보드 |
| 17. 고지 | 18. 골판지원지 | 19. 백판지원지 | 20. 백상지원지 |
| 21. 알루미늄스크랩 | 22. 재생알루미늄괴 | 23. 야자각숯 | 24. 폐식용유관련자재 |
| 25. 폐합성수지관련자재 | 26. 기타환경관련자재 | |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6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공고

과학기술부 공고 제96-24호

2000년대 초까지 생명공학분야의 우리 기술수준을 선진7개국 권에 진입시켜 생물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한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96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6월 20일

과학기술처장관

1. 사업내용

분 야	사업 기간	대 분 류 명	신규과제 공모여부
생물소재관련기술 보건·의료기술	'96. 8~'97. 7	○ 생체기능의 산업적 이용기술 ○ 인체기능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신규공모 없음. 공 모
농림수산업 및 식품기술	'96. 8~'97. 7	○ 개놈해석 및 이용기술개발 ○ 생물자원의 유전공학적 육종 및 기내증식 기술개발	" 신규공모없음
환경, 안전관리 및 생물자원 보존 이용기술 생명공학분야 개발전략수립연구	"	○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기술개발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정(생명공학(연)) 사전조사연구 등	"

2. 지원범위

- 중간진입(Mid - Entry) 전략에 의거한 신규 추진과제 및 개발 및 개발전략수립연구과제를 제외하고는, '95년도에 착수한 과제에 국한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임.
- 과제신청을 위한 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REP))에 명시된 내용 참고
- 제안요구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한 anonymous F T P(stepimail.stepi.re.kr의 form 디렉토리의 bio.hwp 파일)에서 제공

3. 서류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웹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하고, 한글 2.1 이상 또는 Ms - word 4.0 이상으로 작성하여 e - mail 또는 우편(디스켓)으로 제출
- 제출에 따른 필요서류는 anonymous F T P(stepimail.stepi.re.kr의 form 디렉토리의 bio.hwp 파일)에서 제공

4. 웹 홈페이지 및 e - mail주소

구 분	주 소
인터넷 웹홈페이지	http://ra.stepi.re.kr
e - mail	bio @ stepimail.stepi.re.kr

5.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1996년 6월 17일(월)~ 1996년 7월 6일(토)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홍인동 13-1 한성플라자 빌딩(우 100-430)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5호(우 130-650)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사업관리실(02·250-3180, 3169)

6. 연구관리 전자문서화 시스템도입에 관한 설명회 개최

(경인지역)

(대전 및 기타지역)

일 시 : 1996년 6월 18일 15:30~17:30

일 시 : 1996년 6월 19일 15:30~17:30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장 소 : 한국화학연구소 대강당